

의안번호	2211608
의 퇴 인	이해민의원
회 답 일	2025. 8. 20.
추 계 번호	25B3942

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5,000만원(연평균 1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안 제15조(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의 수립 등)	—	—	50	—	—	50	10

주: 최근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사례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, 향후 실제 연구용역 실시 방식 및 단가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자료: 우주항공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5조 (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의수립등)	정부는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<u>5년</u> 마다 우주위험 대비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(이하 “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함(제1항) ※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15조 (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의수립등)	○	•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수립주기 변경 - (현행) 10년 → (개정안) 5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□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수립 주기 변경(안 제15조제1항)

- 현행법¹⁾은 정부가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, 최근 수립된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은 2024년 수립된 ‘제2차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(’24~’33)’임
 - －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‘제2차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(’24~’33)’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수립 전년도인 2023년 실시하였으며, 연구용역비로 5,000만원이 소요됨

[표 2] ‘제2차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(’24~’33)’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개요

구 분	내 용
계획명	제2차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(’24~’33) ※2024.10.29.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
용역수행기관	한국천문연구원
용역수행기간	2023. 4. 1. ~ 12. 31.
용역비	5,000만원

자료: 우주항공청

- 개정안에 따라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‘제2차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(’24~’33)’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참고하여 추계함
 - － 최근(제2차)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 2023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024년 수립된 것을 고려하여, 개정안에 따른 다음(제3차)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은 2028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029년 수립되는 것으로 가정함
- 추계결과,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5,000만원(연평균 1,000만원)으로 추계됨

1) 제15조(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정부는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우주위험 대비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(이하 “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[표 3]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수립 주기 변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현행 (A)	10년 주기	—	—	—	—	—	—	—
개정안 (B)	5년 주기	—	—	50	—	—	50	10
추가재정소요 (C=B-A)		—	—	50	—	—	50	10

주: 1) 최근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사례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, 향후 실제 연구용역 실시 방식 및 단가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2) 현행법에 따른 경우 다음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2033년 실시될 예정임
자료: 우주항공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최근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사례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, 향후 실제 연구용역 실시 방식 및 단가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